

「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2항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 유상 여객운송사업 신청 수요조사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7월 1일
국토교통부 장관

1. 목적

-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업계 지원을 위해 자율주행자동차 유상 여객운송사업에 대한 수요 등을 파악하여 정책추진에 참고하고자 함

2. 공고 내용

- 수요조사(붙임 작성양식 참고)
 - 2022.6.24. 현재 지정된 14개 자율차 시범운영지구내 자율차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유상 여객운송사업에 대한 자율주행 업체의 수요조사
- 의견수렴(붙임 작성예시 참고)
 - 자율차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자율주행 업체별 신청방식 및 허가 방식에 대한 의견수렴

3. 제출기간 및 제출방법

- (제출기간) 2022년 7월 4일(월) ~ 7월 11일(월) 18:00 까지
- (제출방법) 전자 메일로 제출(kalar114@korea.kr)
 - * 문의처 : ☎ 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과, 044-201-4147, 3851

4. 수요조사 및 의견제출 작성양식

- 붙임 자료에 따름

붙임

시범운영지구내 유상 여객운송사업 수요조사 양식

- 수요조사 작성예시
 - 신청업체는 신청예정지구 해당 시·도에 2022년 해당 사업에 대한 운영계획(허가대수 등)을 확인하고 작성 요망

신청업체	신청예정 지구	신청대수(차종)	임시운영 허가여부	신청지구 운행경력	비고
○○사	○○지구	2대(쏘라티, 아이오닉)	허가증(○)	'21.5~현재까지 (1,100km)	
○○사	○○지구	1대(니로)	허가증(×)	없음	

- 의견수렴 작성예시

업체명	신청방식 및 허가방식에 대한 의견
○○사	(1) 일정기간 동안 동시에 신청을 받아 일괄(통합)심사 후 적격업체 대상으로 허가여부 결정 - 신청업체 수요가 지구내 연도별 허가대수 총량을 초과할 경우 업체당 적정 대수 배분방식을 결정할 필요 있음 (2) 업체 개별적으로 신청을 받아 개별심사 후 허가여부 결정 - 신청업체 선착순으로 심사할 경우 연도별 허가대수가 조기에 소진될 우려가 있어 후순위 신청업체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있음